

2023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구 미 시

2023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 .

제출자 : 구미시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2023년도분 지방채 발행 ⇨ 54,500백만원

- 1)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 : 50,000백만원
- 2)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 1,500백만원
- 3) 오태공원 조성사업 : 3,000백만원

2. 제안이유

가. 도시건설국

1) 도시재생과

가)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2023) : 50,000백만원

- (1)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2019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로 부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된 사업으로,
- (2) 1산단(공단동 249번지 일원)에 산업·문화 등이 융합된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창업오피스·복지시설·행복주택 등의 지원시설 확보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
- (3) 현재 건축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지구 내 시설위치 이동에 따른 시설면적 증가로 총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2023년 투입될 실질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2023년도 구미시 지방채 발행여부에 대하여 「지방 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2023) : 1,500백만원

- (1) 국토교통부 '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상 국고지원액(중심시가지형, 150억원)에 비례한 주택도시보증기금을 10%이상 활용토록 의무화
- (2) 이에 따라 「금오시장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 재정여건 상 2023년도 구미시 지방채 발행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환경교통국

1) 공원녹지과

가) 오태공원 조성사업(2023) : 3,000백만원

-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오태공원은 주변 도시개발에 따른 주민이용도와 왕산 허위선생 기념관과 연계한 공원개발의 가치가 높아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전 실시계획인가(20.6월)를 득했음.
- (2) 한편, 관련 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후 5년 내 토지보상을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계획이 취소됨.
- (3) 이에 따라 기한 내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오태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 재정여건 상 2023년도 구미시 지방채 발행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발행개요

□ 2023년 지방채 발행

○ 세부내역

(단위:억원)

부서명	사 업 명	신청액	소관	비고
계	2개 부서, 신청 3건	545		
도시재생과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	500	산업건설위	기발행 130억원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15		
공원녹지과	오태공원 조성사업	30		기발행 20억원

4. 주요내용

가.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

1) 지방채 발행계획

- 발 행 액 : 50,000,000,000원(금오백억원)
- 차 입 선 : 주택도시보증공사
- 연 리 : 1.8%
- 상환기간 : 최장13년(만기일시상환) ※ 필요 시 최장 35년까지 지원
- 상환재원 : 시비
- 발행방법 : 캐피탈 콜* (Capital call)

* 캐피탈 콜(Capital call) : 융자금 전체를 미리 설정한 뒤 투자가 필요할 때마다 약정된 계약에 따라 투자금액을 조성하고 집행하는 방식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년 / 5년간
- 위 치 : 구미시 공단동 249번지 일원
- 총사업비 : 1,912억원 ※ 뉴딜사업비417(국250, 도42, 시125), LH342, 기금(융자)1,153
- 사업규모 : 18,280㎡(4개동, 지하2층 ~ 지상18층)
- 공 정 율 : 20%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위치도 및 조감도(안)>

위치도



조감도



나.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1) 지방채 발행계획

- 발행액 : 1,500,000,000원(금일십오억원)
- 차입선 : 주택도시보증공사
- 연리 : 1.5%
- 상환기간 : 최장17년(만기 일시상환)
- 상환재원 : 시비
- 발행방법 : 증서차입채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4년 / 3년간
- 위치 : 구미시 원평동 1033-7번지(대지면적 931.3m²)
- ※ 상상어울림 플랫폼 '소통'
- 총사업비 : 85.2억원(국 47.34 도 7.89 시 14.97 기금 15)
- 공정율 : 5%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구상도>



다. 오태공원 조성사업

1) 지방채 발행계획

- 발행액 : 3,000,000,000원(금삼십억원)
- 차입선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 연리 : 2%
-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 상환재원 : 시비
- 발행방법 : 증서차입채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6년 / 7년간
- 위 치 : 구미시 임은동 산9-1번지 일원
- 총사업비 : 9,600백만원(보상 7,000 공사 2,500 설계 100)
- 공 정 율 : 토지보상(1차) 진행 중 - 6필지 12,305m²

<오태공원 조성계획도>



5. 근거법령

- 가.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1항 및 제2항
-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제1항
-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7항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6호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⑤항 생략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위임을 받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중략)

⑤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전략계획 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에게 그 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20.>

⑦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2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⑦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소 관 부 서		기획예산담당관
입 안 자	과 장	김 은 영
	담 당	정 윤 호
	담 당 자	서 주 희 (480-6517)